



교육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6. 12. 29.(목) 조간	담당부서	대학지원실 전문대학정책과
배포일시	2016. 12. 28.(수)	담당과장	최성부 (044-203-6411)
대변인실	044-203-6588	담당자	사무관 김수정 (044-203-6407) 주무관 정상현 (044-203-6408)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 졸업이수학점 학칙으로 제정
- 4년제 개편 간호학과에 학위심화과정(종전 3년제 졸업생) 개설 근거 마련
- 장애학생에 대한 학위심화과정 입학 제한 규제 해소

□ 교육부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 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17.1.3~2.13)한다고 밝혔다.

* 근거 : 고등교육법 제49조 및 제50조의2, 전문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개정안은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상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대학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졸업이수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4년제로 개편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도 학위심화과정을 개설**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종전 3년제 간호과를 졸업한 전문학사 간호사가 계속해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간호과가 설치된 86개 전문대학 중 81개 대학이 4년제로 개편

** 학위심화과정은 전문학사학위 모집단위를 근거로 개설 가능하며, 4년제로 개편된 학사학위 모집단위에서는 학위심화과정 개설 불가능

- 또한, 장애학생에 대한 학위심화과정 입학 제한 규제를 해소하여 장애인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가. 학위심화과정의 이수학점 관련

- (종전)학위심화과정 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학칙으로 정함
 → (개선)이수학점 제한없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나. 4년제 개편 간호학과의 학위심화과정 개설 근거 마련

- (종전)학위심화과정은 전문학사학위 모집단위를 근거로 개설 가능
 → (개선) 종전 3년제 졸업생에 대한 학위심화과정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정

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위심화과정 입학 제한 규제 해소

- (종전)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구별없이 전체 정원의 20% 범위로 제한
 → (개선)장애학생에 대해서는 20% 범위 제한없이 입학이 가능하도록 개정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문학사 졸업 간호사의 계속교육기회 확대로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장애학생에 대한 학위심화과정 입학 제한 규제를 해소하여 장애 학생의 직업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밝히며,

- 전문대학의 학위심화과정 이수 학점을 학칙으로 정함에 따라 전문대학에 자율성이 부여되는 만큼 교육부에서는 연차 점검을 통해 질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각 대학에서도 학위심화과정 운영을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김수정 사무관(☎044-203-64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 교육부공고 제2016 - 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월 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에 대한 졸업이수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문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4년제로 개편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학위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위심화과정 이수학점 자율화(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3 개정)

1) 학위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4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대학의 경우 졸업학점 및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전문대학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자율성 저해

2) 전문대학 학사학위과정에서도 이수학점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문대학에 대한 형평성 및 자율성 제고

나.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위심화과정 개설 근거 마련(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개정)

1) 학위심화과정은 전문학사학위 모집단위를 근거로 개설가능하여 4년제로 개편*된 간호학과는 전공심화과정 개설 불가능하므로, 전문학사학위 모집단위를 근거로 하는 규정 삭제

* 간호과가 있는 86개 전문대학 중 81개가 4년제로 개편

2) 3년제 간호과 졸업생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전문학사 졸업 간호사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

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위심화과정 입학 제한 규제 해소(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개정)

1)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경우 장애인은 특례입학을 통해 정원제한없이 입학가능하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경우, 장애인과 일반인 구별없이 전체 정원의 20% 범위로 제한함에 따라 장애인의 계속교육에 제한이 있음

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특례입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제한없이 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 부여

라. 학위심화과정 등록 자격 법령 미비 사항 정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4 개정)

1) 고등교육법상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산업체 경력자 및 예외적으로 경력이 없는 자도 가능하나, 시행령상 등록자격은 산업체 경력자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법과 시행령 상충

2) 상충된 법령 미비사항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 전화 : 044-203-6407 (FAX : 044-203-6739)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399-012)
- 전자주소 : oppazoa@moe.go.kr

※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끝.

대통령령 제 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 제3항 중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를 “학점 및 학사학위 수여와 종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제58조의4 제1항 중 “자의 자격은 제58조제2항에 따른다”를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

해당호	학년별 · 연도별 총학생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7. 제29조 제2항 제13호	제29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의 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 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초과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 7호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58조의3(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③</p> <p><u>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u></p>	<p>제58조의3(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③</p> <p>-----</p> <p><u>학점 및 학사학위 수여와 종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u></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 외에</p> <p><u>학사학위 수여와 종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u></p>	<p>④ 삭제</p>
<p>제58조의4(학위심화과정의 등록 자격) ① 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u>자의 자격은 제58조제2항에 따른다.</u></p>	<p>제58조의4(학위심화과정의 등록 자격) ① -----</p> <p>----- <u>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u>이어야 한다.</p>

◦ [별표 1]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